

산학협력단 간접비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계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「간접비 규정」에 의거,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내규의 적용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간접비수익(이하 “간접비”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한다.(개정 2021. 9. 27.)

제3조(간접비 징수 및 면제) ①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 9. 27.)

② 간접비 비율이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지침을 준용한다.(개정 2021. 9. 27.)

③ 간접비는 산학협력수익, 지원금수익 등 수익계정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21. 9. 27.)

④ 위탁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4조(간접비의 사용범위) ①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21. 9. 27.)

② 전년도 간접비 수지차액 범위 내에서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전출할 수 있다.(개정 2021. 9. 27.)

③ 직접비에서 사업단 운영비 등을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장 결재 후, 간접비의 일부를 사업단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개발능력성과급) ①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% 범위 내에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21. 9. 27.)

②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연구활동지원금)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21. 9. 27.)

②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우수연구소 지원) ①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연구소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간접비 이관) ① 연구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가 타 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하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연구과제에 대하여 징수한 간접비의 일정액을 전직하는 대학 또는 기관으로 이관한다.

② 이관대상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36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.(개정 2021. 9. 27.)

제9조(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및 예산 이월 불가) ① 간접비 수입금은 당해연도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수입금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

다음 연도 회계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 및 사용할 수 없다.

제10조(자금관리 및 결산보고)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(개정 2021. 9. 27.)
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간접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